

##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의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의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등록번호 : 20211810  
최초 등록일 : 2021.08.09  
최종 등록일 : 2024.12.11

## 풍담

### 정보공개서

아이풍담 주식회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아이풍담 주식회사

#### <주의사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32길 30, 8층 804호805호(구로동,코오롱 디지털타워빌라트)

[대표 전화번호]02-853-8991 [대표 팩스번호]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사업팀 / 02-853-8991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해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아임풍담 주식회사	풍담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32길 30, 8층 804호805호(구로동,코오롱디지털타워빌단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1.06.23	2021.07.01	이재용	02-853-8991	-
	법인등록번호	110111-7933975	사업자등록번호	871-88-01700	

### 2.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이재용/ 아임풍담주식회사	풍담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32길 30, 8층 804호805호(구로동,코오롱디지털타워빌단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재용	02-853-8991	-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이재용/ 주식회사더모커피	풍커피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32길 30, 8층 804호805호(구로동,코오롱디지털타워빌단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재용	02-853-8991	-

### 3.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해당없음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구분	내용	추가 설명
명칭	풍담	
상호	풍담 ○○점	
상표(서비스표)		상표출원번호: 20-2021-0149913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	469,746	243,812	225,933	1,071,780	239,293	239,292
2022	519,829	533,188	-13,358	393,643	-68,372	-69,433
2021	367,135	410,060	-42,925	18,539	-152,934	-152,925

※ 근거자료는 별첨[재무현황]과 같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당사가 **[풍담]** 가맹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이재용	사내이사	2022.09.08 ~ 현재	아임풍담(주) 대표	사업 총괄
				아임풍담(주) 대표	사업 총괄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0

### 8.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특수관계인 (이사)	(주)더모커피/이재용	가맹사업경영	2021.07~ 현재	풍커피 (등록번호: 20214187)이라는 영업표지의 카페 사업경영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권)	가맹점 내외운영	2021.07.20.출원	출원번호 40-2021-0149913	이재용	-
(상표권)	가맹점 내외운영	2021.02.19.출원	출원번호 40-2021-0034949	이재용	-
(상표권)	가맹점 내외운영	2021.02.19.출원	출원번호 40-2021-0034950	이재용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22년 5월 10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21년 10월 25일 )

2. 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식회사 더모치킨	퐁닭	이재용	가맹사업 예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511씨-6호(구로동, 이앤씨벤처드림타워6차)
주식회사 더모치킨	퐁닭	이재용	가맹사업 예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천로 446, 102동 1105호(구로동, 예성유평아)
주식회사 더모치킨	퐁닭	정민경	가맹사업 예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흥대로 558-1, 501호(신림동, G벨리마인드)
주식회사 더모치킨	퐁닭	이재용	2022.5.10.~2024.09.1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32길 30, 8층 804호805호(구로동,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
아임퐁닭 주식회사	퐁닭	이재용	2024.09.10.~현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32길 30, 8층 804호805호(구로동,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

### 3. 당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퐁닭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치킨	치킨

###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	1	19	18	1	21	20	1
서울	1	-	1	4	3	1	3	2	1
부산	-	-	-	1	1	-	1	1	-
대구	-	-	-	-	-	-	1	1	-
인천	-	-	-	2	2	-	2	2	-
광주	-	-	-	-	-	-	1	1	-
대전	-	-	-	1	1	-	1	1	-
울산	-	-	-	1	1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6	6	-	7	7	-
강원	-	-	-	1	1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1	1	-	-	-	-
전남	-	-	-	-	-	-	2	2	-
경북	-	-	-	1	1	-	1	2	-
경남	-	-	-	-	-	-	-	-	-
제주	-	-	-	1	1	-	1	1	-

### 5.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3	18	11	0	9	1	20
2022	0	23	0	5	0	18
2021	-	-	-	-	-	-

### 6. (최근 3년 동안) 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특수관계인 (사내이사)	(주)더모치킨/이재용	퐁닭	20214187	커피	0/0	0/0	0/0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sup>2</sup> 당	상한	면적 3.3m <sup>2</sup> 당	하한	면적 3.3m <sup>2</sup> 당	
전체	20	14,992	1,008	44,272	4,427	1,569	157	
서울	2	해당없음	-	-	-	-	-	
부산	1	해당없음	-	-	-	-	-	
대구	1	해당없음	-	-	-	-	-	
인천	2	해당없음	-	-	-	-	-	
광주	1	해당없음	-	-	-	-	-	
대전	1	해당없음	-	-	-	-	-	
울산	-	해당없음	-	-	-	-	-	
세종	-	해당없음	-	-	-	-	-	
경기	7	15,502	957	33,413	3,150	3,208	196	
강원	-	해당없음	-	-	-	-	-	
충북	-	해당없음	-	-	-	-	-	
충남	-	해당없음	-	-	-	-	-	
전북	-	해당없음	-	-	-	-	-	
전남	2	해당없음	-	-	-	-	-	
경북	2	해당없음	-	-	-	-	-	
경남	-	해당없음	-	-	-	-	-	
제주	1	해당없음	-	-	-	-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

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8. [종답]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종답]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20	430일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 없음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	<b>[비공개]</b>	23.01.~23.12.	1,010	1,010	-	
판촉			-	-	-	
합계			1,010	1,010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사 가맹본부와 예치계약 된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기업은행	전 지점	지점 및 인터넷뱅킹	1566-2566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가맹본부와 계약한 예치 은행창구에서 예치신청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뱅킹에 의한 예치방법은 가맹금예치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당 가맹본부 상호를 찾아 예치금액을 입력하여 예치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예치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위반을 이유로 가맹금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4개월 이내 반환 청구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와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 상품명	프랜차이즈 보증보험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b>아이폰담 주식회사</b>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개시일까지)	계약체결일부부터 최대 2개월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예치가맹금 범위 내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1개월 소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체결일에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당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예치가맹금을 귀하로부터 직접 지급 받는 대신 보험증권을 귀하에게 교부합니다.

귀하가 교부받은 보험증권의 보험효력은 위 표의 보험기간과 동일하므로 동 기간까지 보험증권을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 1. (최근 3년 동안) 당사와 임원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 관련) 당사와 임원의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최근 3년 동안) 당사와 임원의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아래의 비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외비용 : 점포임대관련 비용]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구분	반환조건	지급시기	비고
가맹비	5,500	영업지역의 대가(30%)	계약체결전 전	계약체결과 동시	
		기술 매뉴얼 제공의 대가(50%)	기술제공 전		
		개업지원(20%)	개업지원 전		
교육비	2,200	메뉴, 서비스, 운영등 오픈준비교육	교육참가 전		
총계	7,700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으며, 계약 종료시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현금)보증금	3,000	계약체결과 동시	본사가 공급한 물품 미수금, 로열티, 계약위반에 따른 지체상금 등	보증금은 서울신용보증금으로 대체 가능(1천만원) / 보증금 설정 수수료는 전액 가맹점에서 부담한다.
총계	3,000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보증금은 부가세 없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가맹비	5,500
교육비	2,200
(현금)보증금	3,000
합계	10,7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품목은 'V.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기준:33㎡)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점포 내외공사)	가맹본부	15,400	1,540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전	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3.3㎡ 늘어날 때마다 추가부담
필수설비 (주방설비/기기)	가맹본부	7,150	715	인테리어 공사 시작과 동시	발주 전 계약취소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됨
의탁자(가구)	가맹본부	550	-	인테리어 공사 시작과 동시	발주 전 계약취소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됨
간판및사인물 디자인적용물품	가맹본부	3,850	-	물품 공급 1일 이전	발주 전 계약취소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됨
초도물품	가맹본부	3,300	-	물품 공급 3일 이전	발주 전 계약취소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됨
총계		30,250	3,025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별도비용: 철거, 증설, 소방, 냉난방, 수도배관, 음향, 외부테라스, 각종 가구류, 간판 등 건적 외 품목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실제 및 감독 대가로 220만원(vat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 3일 이내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상담을 통하여 가맹점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점희망자에게 권유 → 가맹점사업자 선정 ※ 점포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가맹점사업자부담입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220	익월 15일	후불로 반환되지 않음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등	지급명세서 도달 후 7일 이내			20쪽 참조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등		미 시행시 반환	시행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220	비용 통지서 도달 후 7일 이내	미 시행시 반환	시행	교육 필요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협의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지정업체 (미지정) 또는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23쪽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지급하는날까지			경과했을 시 부담
--	--	--	---------	--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해당 없음.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해당 없음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판매상품리스트]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및 미시정시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다른 가맹점사업자 등 소비자 외 제3자	※별첨[공급상품리스트] 참조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및 미시정시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판매상품리스트] 참조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치킨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	퐁닭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 설정기준

설정 기준	설정방법
계약매장에서 직선거리(정상적인 횡단보도 및 인도)로 [2km]을 원칙. 단, 2km내 주거세대수가 8천세대를 초과할 경우 8천세대를 초과하는 않는 범위로 영업지역을 설정함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백화점, 쇼핑몰, 고속버스터미널, 기차역, 지하철역, 공항, 여객터미널 등의 복합다중시설내와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6차선(그 이외지역은 4차선)이상의 도로의 건너편은 추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업종이 아닌 영업표시를 가진 가맹사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해당 영업지역에 추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제조정 사유	제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 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제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당사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도로사정의 변경이나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영업지역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88%	12%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관련 계약조문 제38조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관련 계약조문 제39조

1. 가맹점사업자가 원·부재료, 교육비, 가맹비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4.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영업양도, 승계, 담보제공, 사업자위치변경을 한 경우
7. 영업상 비밀공개의무 위반이나 영업금지 위반을 한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에 의한 점포환경개선 실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11.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부재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품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12.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공방법, 종류(메뉴 등), 판매방법, 서비스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운영하는 경우
1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운영규칙을 위반한 경우
1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39조 [즉시계약 해지 사유]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실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7조 [계약 수정 사유]

○ 이 계약의 내용은 양당사자 모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만 변경될 수 있다.	
제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운영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교육수로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절차 완료	
업무위탁	불가능	-		

※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후 1년 동안 [동일한 영업지역 내에서] 귀하가 **[종답]**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일반인에게 <b>치킨을 주메뉴로</b> 제공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운영팀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상권마다 상이함	월24일 이상(단, 설,추석명절 제외)	문의: 운영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2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50%	50%	행사 계획 공고→가맹점주들의 행사동의→ 행사 시작 (단, 광고 성격상 분담비율을 조정하여야 함이 상당할 경우 조정가능함)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가맹점모집 광고	50%	50%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 전체 행사	통상적인 전체 행사	통일적인 홍보물 등의 디자인, 시안 등의 제작비용 등은 당사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기념품·팝플렛·전단 등의 홍보물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행사 계획 공고→디자인 및 기념품 등 시안 제시→ 행사 시작	월별 판촉 행사
기타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상동	
할인카드·멤버십 제휴서비스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가맹점) 월 할인금액 제시 → (가맹본부) 자료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부담액 송금	할인서비스 등의 종료시까지

※ 본사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oh-point 등(모바일 상품권 포함) 특수한 프로모션 및 제휴카드 는 사전 공지 후 가맹점사업자가 할인금액의 일정 부분을 분담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27조 (관측)
⑤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관측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관측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41조 (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조리법 등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존속 기간 및 계약종료 후 1년간 동일한 영업지역에서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39조 (계약의 해지)
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양 당사자 중 계약기간 중 서면에 의한 양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계약위반, 일방적해지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아래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일금 오십만원(W500,000) X 계약기간 잔여월수

관련 계약조문 제43조 (손해배상)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신용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3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즉시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계약체결 14일 전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계약 1일 전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	
가맹금 지급	- 가맹본부에 가맹금 지급	계약체결 당일	<b>6쪽 참조</b>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3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약 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7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 가맹사업의 분쟁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44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이 계약의 해석 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협의에 의하여 제2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li> <li>○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점의 통압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판교체 비용</li> <li>○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바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비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li> <li>○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li> <li>○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종료(계약의 해사 영압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li> <li>〈분할지급 시 절차〉</li> <li>○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li> </ul>		
--	--	--	---	--	--

단, 당사가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비에 서 당사 분담 비용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합니다.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체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체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가맹점 오픈시 관측인원 과건 및 전단지, 기념품 등의 관측비용 지원	가맹점의 매장면적, 예상매출액에 따라 관측인원 수 및 관측비용 차등 지원	초도물품 입고일로부터 5일간	소요되는 비용	가맹점과 협의

### 3. 경영활동 지원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운영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운영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 없음.

**8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점포운영, 기기사용법, 발주 및 입금 방법 등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교육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전까지	필수 교육
수시 교육	신상품, 서비스 강화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통지 후 7일내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5일	약 2,200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	3일	연 220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 수시교육은 비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필요시 실비수준으로 책정된 금액을 사전통지 하며, 교통비, 숙식비는 개별 부담임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 불참할 경우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b>제39조</b> (계약의 해지)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b>제38조</b> (계약의 갱신과 거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업이 거부되거나 보류될 수 있다	<b>제15조</b> (개시 승인)

## 9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구로디지털본점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30 코오롱빌란트1차 106호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2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 해당 없음 ( 6개월 미만 운영 )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운영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첨] 재무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필수설비/집기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공급상품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상기의 제품 중 당사의 영업표지가 삽입된 제품은 강제함
- ※ 상기 공급상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첨]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수령확인서 - 가맹점사업자>

<b>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b>			
성 명	(인) 또는 서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공일시	____년 ____월 ____일 시	제공받은 장소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맹본부로부터 \_\_\_\_\_.

(정보공개서 제공받은 사실을 자필로 작성 예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가맹본부 :** \_\_\_\_\_ (인) 또는 서명

<수령확인서 - 가맹본부>

<b>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b>			
성 명	(인) 또는 서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공일시	____년 ____월 ____일 시	제공받은 장소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맹본부로부터 \_\_\_\_\_.

(정보공개서 제공받은 사실을 자필로 작성 예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가맹본부 :** \_\_\_\_\_ (인) 또는 서명

[별첨]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수령확인서

<b>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수령확인서</b>	
<b>정보공개서 주요목차</b>	<b>가맹계약서 주요내용</b>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II.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범위반사실 III.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I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10. 기타
<b>비밀유지확약</b>	
<p>본인은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본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의 따른 자문을 받는 등 당 가맹사업을 위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무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출, 복사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본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귀사에게 본 정보공개서를 신속히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p> <p>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p>	
<p>하기 본인은 '가맹사업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amp;가맹계약서를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아울러 상기의 비밀유지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p>	
<p><b>정보공개서 수령일자 : 20 ____년 ____월 ____일</b></p> <p><b>장소 시간 제공자 : _____ 에서 _____ 시에 _____ 에게 수령받았습니다</b></p> <p><b>정보공개서 수령자 : _____ (인)</b></p> <p><b>주민번호 : _____</b></p> <p><b>전화번호 : _____</b></p> <p><b>주 소 : _____</b></p> <p><b>가 맹 본 부 : 아이م푸드 주식회사 대표자 귀하</b></p>	